

제266회 영등포구의회
2025년도 제2차 정례회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

전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25. 11. 21.

행 정 위 원 회
전 문 위 원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경 과

의안 제644호로 2025년 11월 7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1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「서울시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」의 일부가 「보건복지부 아동 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」으로 전환되어 그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아동 구강 건강관리를 위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제명을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 치과치료 지원 조례」로 변경
- 나. 서울시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종료에 따른 관련 조항 삭제
- 다.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한 규정(안 제1조와 제2조)
- 라. 시행계획의 수립에 대한 규정(안 제3조)
- 마. 지원대상 및 지원액 등에 대한 규정(안 제4조와 제5조)
- 바. 치과치료 제공자 및 치과치료비 신청 등에 관한 규정(안 제6조와 제7조)
- 사. 지역협의체 구성, 운영 및 기능에 관한 규정(안 제8조와 제9조)
- 아. 자원봉사자 활용 및 환수조치에 관한 규정(안 제10조와 제11조)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구강보건법」 제7조,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18조, 「보건의료기본법」 제43조
- 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- 다. 협의사항
- 1) 부패영향평가: 원안 동의
 - 2) 인권영향평가: 별도 의견 없음
 - 3) 규제심사: 신설 · 강화되는 규제 사무 없음
 - 4) 성별영향분석평가: 개선 사항 없음
 - 5) 위원회 운영사항 검토: 개선 요청 사항 반영
- 라. 입법예고(2025. 10. 2. ~ 10. 22.) 결과: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전부개정안은 “서울시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” 중 일부가 “보건복지부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”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 사업명이 “아동 치과치료 지원사업”으로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는 목적으로 제출됨.

○ 주요내용

- 제명을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」에서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 치과치료 지원 조례」로 변경하였으며, 사업명과 수혜 대상자가 변경됨에 따라 전체 조문에 변경 사항을 반영함.
- **안 제2조** 정의 규정에서는 사업명 변경을 반영하여 “치과주치의”는 “치과치료 지원”으로 “치과주치의료비”는 “치과치료 지원비”로

변경하였으며, 사업 수혜 대상자 변경을 위해 “저소득층 아동”을 “아동”으로 정비하였음.

- **안 제8조**에서는 지역협의체 위원장과 및 부위원장 호선 규정을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호선하는 것으로 변경함.

○ 검토 결과

- 2024년 7월 1일자로 서울시 지원사업인 “학생 및 아동 치과 주치의 사업” 중 학생 부문이 보건복지부의 “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”으로 전환되어,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이 “학생 및 아동”에서 “아동”으로 축소되면서 제명 및 관련 조문을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 취지는 타당함.
- 또한 실질적으로 본 사업은 관내 18세 미만 기초생활수급권자, 차상위계층을 사업 대상으로 하였으나, 종전 조례에서는 수혜 대상인 저소득층 아동에는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 권리만이 규정되어 있었기에, 개정 조례에서는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을 포함하여 현행 제도 운영 실태와 불일치한 부분을 개선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판단됨.
- 아울러 지역협의체 위원장을 호선으로 정하던 것을 보건소장으로 명시한 **안 제8조**의 개정 사항은 회의 소집, 의제 관리 등 위원 회의 운영 효율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정책 결정의 일관성 제고 효과가 기대되므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됨.

참 고 자 료

1 구강보건법

제7조(구강보건사업의 시행)

- ①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강보건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.
- ②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 또는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)의 보건소(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에는 「지역보건법」 제16조에 따라 치과의사 및 치과위생사를 둔다.
- ③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구강보건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인력, 기술 및 재정 지원을 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2 국민건강증진법

제18조(구강건강사업)

-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구강질환의 예방과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.
 1.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사업
 2.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
 3. 구강건강에 관한 조사·연구사업
 4. 아동·노인·장애인·임산부 등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구강건강증진사업
 5. 기타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

3 보건의료기본법

제43조(구강 보건의료)

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구강질환(口腔疾患)의 예방 및 치료와 구강건강에 관한 관리 등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